

2025-10-13

(25-6567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본 통보문은 10.6 조항에 따라 회람한다.

1. **통보국가: 튀르키예**

해당되는 경우, 관련 지방정부의 명령(제 3.2 조 및 제 7.2 조):

2. **담당기관:**

산업기술부

EU 및 외교 담당 총국

Mustafa Kemal Mah. Dumlupinar Bulvari Eskeşehir Yolu 2151. Cad. No:154 Cankaya - Ankara/ Türkiye
이메일: sumeyye.sabanci@sanayi.gov.tr

3. 근거 조항 제 2.9.2 조 [X], 제 2.10.1 조 [], 제 5.6.2 조 [], 제 5.7.1 조 [], 제 3.2 조 [], 제 7.2 조 [], 기타:

4. 해당 제품(HS 코드 또는 국가 관세 분류 번호. 해당되는 경우 ICS 번호를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음): 실내 히터 및 관련된 별도 제어장치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

5. 통보 문서의 세부 사항(제목, 페이지 수, 접근 방법): 실내 히터 및 관련된 별도 제어장치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관한 공보안 (2024/1103/AB)(SGM-2025/..); (38 페이지, 영어)

요청 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당국의 통보 문서 및/또는 연락처 링크:

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5/TBT/TUR/25_06842_00_e.pdf

6. 내용: 본 공보는 다음 제품에 적용된다.

(1) 본 공보는 제품 자체 또는 단일 파이프 구간과 관련된 별도 제어장치 공칭 열출력 50kW 이하인 가정용 실내 히터 및 공칭 열출력 300kW 이하인 상업용 실내 히터에 적용된다.

(2) 다음 제품에는 본 공보가 적용되지 않는다.

(a) 증기압축 사이클 또는 흡착 사이클을 사용하는 전기구동 또는 연료구동 열 발생형 실내 히터

(b) 옥외용으로만 설계, 시험, 판매 및 신고된 실내 히터

(c) 직접 열출력이 공칭 열출력에서의 직접 열출력과 간접 열출력을 합한 값의 6% 미만인 실내 히터

(d) 온풍 제품

(e) 사우나 스토브

(f) 조리기구

(3) 제조업체, 수입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이 해당 제품과 함께 제공한 설계, 기술특성, 의도된 용도, 마케팅 표시 또는 기타 정보가 본 공보에 포함된 실내 히터와 충분히 구별되지 않는 경우, 제조업체, 수입업체 또는 공인 대리인은 제 2 항에 근거하여 제품이 본 공보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.

7. 목적 및 근거(해당되는 경우 긴급한 문제의 성격 포함): 본 공보는 2022년 4월 2일자 대통령령 제5187호로 시행된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, 제품 자체 또는 단일 파이프 구간 공칭 열출력 50kW 이하인 가정용 실내 히터 및 공칭 열출력 300kW 이하인 상업용 실내 히터의 시장 출시 및 가동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을 규정한다. 또한 본 공보는 관련된 별도 제어장치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도 규정한다.

본 공보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9/125/EC의 시행, 집행위원회 규정(EU) 2015/1188의 폐지, 실내 히터 및 관련된 별도 제어장치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관한 2024년 4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규정(EU) 제 2024/1103호에 기반하여 유럽연합 법률과의 조화 프레임워크 내에서 작성되었다; 소비자 정보 제공, 라벨링; 국제표준과의 조화

8. 관련 문서:

2020년 5월 3일자 제품 안전 및 기술 규정법 제7223호, 대통령직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 제1호 제388조 및 에너지 관련 제품의 친환경 설계에 관한 규정

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09/125/EC의 시행, 집행위원회 규정(EU) 2015/1188의 폐지, 실내 히터 및 관련된 별도 제어장치의 친환경 설계 요구사항에 관한 2024년 4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규정(EU) 제 2024/1103호

9. 채택 예정일: 본 공보는 공표 즉시 채택된다.

시행 예정일: 본 공보는 공표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.

10. 의견 제공

의견 마감일: 2025-12-12

통보일로부터 60일 [X]

해당 통보와 관련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: